

#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42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1. 05. 허옥희 의원 등 6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1. 12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1. 24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이유

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「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  
나. 군수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3조~제4조)  
다.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(안 제5조~제9조)  
라. 사업비의 지원(안 제10조)  
마. 비밀 누설 금지(안 제11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 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호  
- 예고기간: 2024. 1. 5.(금) ~ 2024. 1. 10.(수) [5일간]  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  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   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   -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를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  -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    -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였음.
  -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(안 제5조~제9조)
    -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.
   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 - 사업비의 지원(안 제10조)
    -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  - 비밀 누설 금지(안 제11조)
  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##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7. 토 론 : 없음.

## 8. 심사결과 : 2024. 1. 24. 원안가결